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 - 93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의 관리를 통하여, 행정 낭비요 인을 없애고 정책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 관리의 목적을 밝히고,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정책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및 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경미한 정책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 교육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243, FAX 042-270-5249, E-mail: papermoon@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의 폐지 등 관리를 통하여, 행정 낭비요인을 없애고 정책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책"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다만,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정책은 제외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정책에 적용한다.
- 제4조(정책의 심의·결정)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전년도의 사업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해 폐지 여부 등을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대상) 제4조에 따라 폐지 여부 등을 심의·결정하는 대상 정책은 다음과 같다.
 -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정책
 -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고 판단되는 정책
 - 3. 행정력이나 예산이 낭비되는 등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

- 4. 대다수의 학부모, 교직원, 학생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학부모, 교직원, 학생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
- 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정책
- 제6조(절차) ① 제5조의 대상이 되는 정책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정책의 검토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기획예산과장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책의 폐지 여부 등 그 결과를 정책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폐지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8조(경미한 정책 등의 관리) 제5조제1호의 정책이나 사안이 경미하 거나 폐지가 시급한 정책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생략하고 정책 주관부서의 장이 폐지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